

제주 금융허브 건설 전략 연구

곽호성*

목 차

- I. 서론
- II. 제주 대부업 허브 건설 위한 제언
- III. 제주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및 감독의 바람직한 방향
- IV. 결론

I. 서론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대표산업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우선 제주를 홍콩이나 일본의 환경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홍콩과 일본의 입지 여건과 제주의 입지 여건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홍콩이나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접근이 편리하고 주변에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화교나 일본인들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현황을 보면 일본과 중국의 몇몇 도시, 대만의 타이페이 정도만 연결되어 있고 항공기 운항편수도 많지 않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제주를 찾는 제주 주변국가의 관광객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주변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청정한 자연환경을 제주도가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여객기나 선박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를 국제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상명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6학기

기본적으로 제주에서 금융 산업이 꽃피기 위해서는 왕래가 편하고 제주가 널리 홍보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의 브랜드 파워에 비교해 볼 때 현재 제주의 브랜드 파워는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제주의 브랜드 파워 제고나 교통 편의의 확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는 대신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하기로 할 것이다. 제주금융허브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폐지와 같은 제도적 개편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금융허브 건설의 토대가 되는 바람직한 법률과 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II. 제주 금융허브 건설 지원을 위한 법률연구

1. 제주 역외금융센터의 바람직한 명칭

제주 금융허브의 핵심은 역외금융센터이다. 역외금융센터란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에 대한 조세 및 외환·자본상거래의 계약절차나 비용 등을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축소해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며 그들의 금융거래를 중개해주는 금융센터이다. 어떤 한 지역이 역외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그들이 본국이나 타 지역에서 적용받는 규제들을 면제해 주어야 하고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제통신망을 포함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외금융센터'라는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역외금융센터란 명칭을 국제금융센터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라는 명칭은 타 지역의 금융센터 명칭과 유사한 바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뚜렷한 개성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좋은 명칭은 '자유금융센터'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자유금융센터라는 이름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주지역의 금융센터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제주 금융허브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의 규제로부터의 자유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에서 부터는 역외금융센터라는 명칭 대신 자유금융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2. 대부업 특화 금융허브

제주 금융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드는 좁히면 좁힐 수 록 강해진다. 세계적 명차인 벤츠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고급 승용차로서의 벤츠만 생각한다. 제주 금융허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주 금융허브와 제주 자유금융센터의 대표적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품은 대부업이다. 대부업은 보통 사채업이라고 지칭되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지만 엄연한 금융서비스의 일종이다. 만일 대부업 시장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차단된다면 대부업 시장에서 자금을 유통하던 수요는 암시장을 형성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대부업 시장을 인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통 대부업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1962년 이자제한법을 제정했으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다. 1998년 고금리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이자제한법과 동 시행령이 폐지되었다. 그러자 민법 제 104조의 일반규정 외에는 이자제한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불법사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살인적 고금리가 등장했다. 이는 상당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3월에는 이자제한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2007년 6월 28일의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연 30%의 최고 이자율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이자의 사전공제, 간주이자, 복리약정제한 등 구 이자제한법보다 상당히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대부업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대부업에서는 연 60%의 고금리가 인정되고 있다.

3. 미국, 일본의 대부업 입법례

일본의 출자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1954년에 입법되어 대금업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대금업자에 대해 이자율 상한과 신고의무를 정해놓고 있었다. 출자법 외에 이자제한법도 1954년부터 모든 금전 대차거래에서 이자율을

규제해 왔는데 출자법이 형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자제한법은 민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출자법에서는 일반인 대부의 경우 연 109.5%, 대부업자의 대부는 연 29.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고 이자제한법에서는 원본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연 20%, 원본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18%, 원본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15%로 규제하고 있다. 각 제한이율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 단, 초과 부분을 임의로 지불한 경우 반환청구는 불가하며, 민사법인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다중채무자의 발생 방지를 위해 출자법 상 상한금리를 이자제한법 상 상한금리 수준으로 인하는 대금업 규제법이 2006년 12월 13일 확정되었고, 법 공포 후 최대 3년 6개월 경과 후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현행 출자법에서는 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상한을 29.2%로 정해놓고 있다. 이자제한법 상 이자상한은 15~20%, 연체이자율은 21.9%~29.2%이다. 이자제한 위반 시 처벌 규정 없고 초과분은 무효로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 주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 은행법에 따라 주 은행감독당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40여개 주에서 금리의 상한을 두고 있다. 다만 금리 상한은 초단기 소액대출, 상품소유권이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계약 등 소액대출의 경우 여러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초단기 소액대출의 고금리 피해가 문제되어 2002.2 미 연방무역위원회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공정용자법 상 서면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연방무역위에 신고하도록 유도했다.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오하이오 주에서는 소액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대부업 이자율은 주 별로 제한 이율에 대해 상한이 없는 경우, 변동상한제를 운영하는 경우, 선택형 이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고정형 이율로 운영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본청구를 불인정하는 경우, 원본만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제한초과이자만 무효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등으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4. 제주 대부업 허브 성공을 위한 입법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대부업 성공을 위한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우선 제주가 대부업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전환해야 한다. 완전히 이자율 제한을 푸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주변국이나 한국의 기존 이자율 보다 확실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대부업을 할 경우 중국이나 일본, 기타 외국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세계의 대부업자들은 제주도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대부업 조달금리는 연 2%에서 6%대로 매우 싸다. 이것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에서 성업을 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대부업을 할 경우 한국 타 지역이나 중국, 일본등과 비교할 때 세금을 훨씬 적게 내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더욱 많은 대부업자들이 제주도에서 대부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당연히 수많은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돈을 차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갈 것이고 이는 제주도 경제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제주에서 대부업이 육성되면 대부업과 연관된 신용평가업, 채권추심업, 레저, 도박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제주의 대부업 수입 중 일부를 최근 각광을 받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투자하면 공익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현행 대금업 등록절차의 경우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가 없다. 그래서 대부업 등록신청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대형의 대부업체들이 많이 들어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 입법에서 대부업 자산규정을 반드시 뒤야 한다.

한국에서는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어 소형 대부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다. 제주도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금융허브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면 대부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영세 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되 최대의 이윤을 내고 편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엔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제주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및 감독의 바람직한 방향

1. 규제외 간소화

현재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① 최소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보유
- ②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대통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④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⑤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①내지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된다.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의 조항을 제주도의 입법에서는 훨씬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종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최소자본금을 명시하지만 그 외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주식회사 창업의 경우 현재도 이미 5천만 원의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어 극히 소액만 갖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마찬가지로 창업투자회사나 헤지펀드 관련 규제도 제주에서는 대부분 사라져야 한다.

1)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

2006년 6월23일 미국 연방 콜롬비아지구 항소법원은 헤지펀드(Hedge Fund) 운용사인 Phillip Goldstein(이하 'Goldstei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EC가 헤지펀드 운용사(일반적으로 헤지펀드의 General Partner)의 SEC 등록을 주된 골자로 하여 2004년

12월 도입한 규정(이하 '구 헤지펀드 규정')이 모법인 투자자문법(U.S. Investment Advisers Act)에 위반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이하 'Goldstein 판결').

대부분의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과거 12개월간 14인을 초과하지 않는 '고객(Client)'을 자문하는 경우 등록이 면제되므로 SEC에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 헤지펀드 규정에서는 '고객(Client)'의 의미를 기존의 해석이나 관행과 다르게 헤지펀드 자체가 아닌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개별 투자자로 보아 기존에 등록이 면제된 대부분의 헤지펀드 운용사들에게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지구 항소법원이 Goldstein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 헤지펀드 규정이 투자자문법의 합리적 문리 해석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의회의 입법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구 헤지펀드 규정의 무효를 선언했다. 이 판결로 SEC는 헤지펀드 규제의 기본적인 도구를 상실했다.

SEC는 3명의 판사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만장일치로 무효를 선언한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을 야기해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Goldstein 판결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투자자들(헤지펀드 자체가 아닌)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와 사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accredited natural person)의 자격 요건을 강화(헤지펀드 투자 당시 총 투자액이 배우자의 투자액을 포함하여 2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이하 '신 헤지펀드 규정')의 제정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원래 미국의 헤지펀드는 증권관련 법규의 각종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감독당국의 규제를 피해 왔었다. 그런데 1998년 Long Term Capital Management가 운용하던 헤지펀드가 불과 5주 만에 40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파산하여 헤지펀드의 잠재된 위험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들에게 느끼게 했다.

그러나 헤지펀드 자산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260 퍼센트까지 증가하였고, 재간접 헤지펀드(funds of hedge funds)의 출현으로 헤지펀드는 더욱 친숙하게 되었으며(retailization), 헤지펀드와 관련한 사기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SEC가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헤지펀드 운용사로 하여금 투자자문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구 헤지펀드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구 헤지펀드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1일까지

SEC에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등록된 헤지펀드 운용사는 SEC가 요청하는 경우 자신의 펀드 운용 기록을 공개해야 하고, 일정 규모의 순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로부터는 성과보수(Performance Fee)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SEC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을 꺼려하거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각종 연금이나 자선 재단 등)의 요청에 따라 상당수가 등록했다. SEC에 따르면 2006년 6월 말까지 등록한 2,500여 개의 헤지펀드 운용사들 중 절반이 구 헤지펀드 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한 운용사들이다.

하지만 Goldstein 판결로 인해 기 등록된 헤지펀드 운용사들에 대해 구 헤지펀드 규정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아울러 헤지펀드 운용사들의 등록철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구 헤지펀드 규정의 무효에 따라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2007년 2월 1일까지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구 헤지펀드 규정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SEC의 헤지펀드 및 그 운용사에 대한 규제 의지는 확고하다. SEC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미국에는 약 8,800여 개의 헤지펀드가 약 1조 2천억 달러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미국의 총 관리자산의 5%에 불과하지만 주식 관련 거래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도 전환사채와 신용파생상품에서 경영권 시장, 사설 대출 시장, 원유 시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SEC는 이러한 헤지펀드의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철저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구 헤지펀드 규정의 제정 배경에서 언급한대로 재간접 헤지펀드의 출현과 각종 공적 및 사적 연금과 대학 재단의 헤지펀드 투자 비율 증가는 직, 간접적으로 일반인들의 헤지펀드에 대한 접촉 국면을 넓히고 있어 SEC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수집과 규제 정책을 계속 진행하도록 만들게 하고 있다.

SEC에 의해 제안된 새 헤지펀드 규정에 관해 시장참여자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금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헤지펀드 투자자의 적격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었다.

전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 앨런 그린스핀은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와 그에 따른 비용이 헤지펀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 한국의 헤지펀드 상황

2010년 초 적격 기관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가 건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1단계로 투자판단능력과 위험부담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인 적격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초부터는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사전등록 규제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적정수준의 레버리지만을 허용하는 한편,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후 시장상황과 글로벌 규제 추이를 감안해 규제를 줄여갈 것이며 앞으로는 50인 미만의 소수 일반투자자들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금융회사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및 신용공여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외부충격 흡수능력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헤지펀드들이 고객 운용자산의 3배까지 자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산 중 절반 이상을 부실채권으로 채워야만 1호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건에는 불만이 있지만 연말 금융권에서 내놓을 대량의 부실채권을 생각하면 그다지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계도 지적된다. 투자자산 중 50% 이상을 부실채권에 투자해야만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투자에 큰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또 아직 국내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차거래를 위해서는 업계 공동 전산망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일부 기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헤지펀드의 핵심 투자기법 중 하나인 공매도가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이 막 시작하는 전 세계 헤지펀드 업계는 위축되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의 주된 투자자였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발을 이탈하면서 운용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 금산분리 원칙 예외 지역

제주도가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과감히 무시해야 한다. 즉 대기업이 얼마든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대한 근거로 주로 제시되는 것이 재벌이 은행을 사유화해 은행의 부실을 야기하여 공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에 재벌이 은행을 창업해서 은행의 자산을 빼내 은행 예금자에 피해를 끼치면 당연히 은행이 파산할 것이므로 재벌은 피해를 보게 된다. 제주도에 새로 설립되는 금산분리 원칙과 무관한 은행에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 철저히 시장 원리에 따라 은행이 설립되고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금산분리 원칙을 제주도에 지키지 않아도 어차피 자유금융센터 운영에는 투명성이 필수적 조건이다. 우선 보통 역외금융센터를 비판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역기능문제에서 자주 사례가 되는 미국 엔론 社 사기사건의 경우 역외금융센터에 SPC(특별목적회사)들을 설립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기의 공모와 추진은 텍사스, 뉴욕 등 미국 본토에서 한 것이다. 엔론 사건에 역외금융센터가 연루된 것은 맞지만 역외금융센터가 사기사건을 주도하거나 주범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 각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 국제감독기구들이 하안색보다 더 하얀 금융시장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센터들은 reputation risk에 매우 민감한 관계로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금융행위 거래자가 센터에서 활동할 경우 국제 신뢰도와 비즈니스 기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또는 진출 인센티브는 투명한 조세제도 및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슬랜드나 아일랜드가 역외금융 발전에 적극 나섰다가 금융위기를 당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역외금융센터로서 외국회사나 외국금융기관의 영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국 은행의 해외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을 유럽대륙 국민들에 대한 모기지대출과 투자를 무리하게 벌이다 부동산버블 붕괴로 은행들이 유동성위기에 몰린 것이다. 반면 저지, 케이만 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등 역외금융센터들은 지난 10년간 IMF의 금융감독시스템 평가를 받으면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의 영향으로 수입은 감소했으나 금융회사 신용위험 위기의 정도는 뉴욕, 런던 등 on-shore 금융센터들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온라인 기반 제주 금융서비스

그 다음은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국가나 지역에 제 2의 제주를 건설하는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 금융허브를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생활의 질 상승과 소득 상승이다. 이 목표만 달성될 수 있다면 제주 금융허브는 중국에 위치해도 상관없고 일본에 위치해도 상관없다. 제주도민들은 중국에서 일해도 되고 일본에서 일해도 된다.

현재 광주광역시시는 세계전자금융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아시아 지역의 전자금융거래를 총괄하는 국제전자금융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제주가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센터를 만들어 경쟁한다는 것은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일이다. 제주도는 광주광역시의 사업을 지원해 일정량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준의 제주인 고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와 광주광역시시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일해도 되고, 광주광역시에 가서 일해도 된다.

한편 한국의 뛰어난 인터넷 사회기반시설은 제주가 e-제주의 형태로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한 금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는 온라인 전용의 핫지펀드나 벤처 캐피탈 창업을 허가해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은행 창업도 허가해주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한국에 온라인 기반의 증권사와 보험사가 있으나 아직 은행이 없는 이유는 은행 설립에 까다로운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은행법 상 한 경제주체가 금감원의 승인 하에서 은행지분의 10%를 소유할 수 있으나 그 중 의결권 지분은 4%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은행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주주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연히 대주주가 성립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실명법 상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이 있을 수가 없다. 제주도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갖고 온라인에서 계좌를 만들고 모바일로 확인하는 은행 설립허가를 내준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더군다나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할 경우 대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에 관심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주지역에서는 은행의 대부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발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이 보험이나 기타 다른 금융상품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데 은행이라고 대부업을 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대부업체가 제주에 들어서면 제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대부업체의 투명성과 건전성 상승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론

제주 금융허브 프로젝트의 성공까지는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조건이나 청정한 자연환경, 자치입법을 통해 빨리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은 현실적으로 볼 때 제주금융허브를 성공시키는데 있어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냉정히 현실을 직시해보면 제주까지 와서, 혹은 제주 금융허브 웹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만큼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익을 만들어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양질의 금융 인력이 제주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질의 금융 인력을 제주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제주는 미래성장을 위해 금융 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만큼 쉬운 것부터 하나씩 발길을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부업 허브 전략처럼 제주 금융산업의 대표 상징을 하나 정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떠올리면 마피아가 생각이 나듯 제주도를 떠올리면 대부업체들이 떠올라야 한다.

제주 금융허브 관련 주장을 하는 이들은 현실적인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금융산업의 대표산업을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의 온-오프라인 대부업으로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구체적이면서 간단해야 달성하기가 쉽다. 일단 처음은 아시아의 주요 대부업 중심지로 시작하면서 차차 헤지펀드의 중심지, 온라인 은행들의 유치, 벤처캐피탈의 유치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주도는 금융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도 같이 이어질 것이다. 가령 벤처캐피탈들이 밀집하면 자동적으로 컨벤션 산업의 발전이 따르게 된다.

본 논문은 제주금융허브 및 제주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기본방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금융허브 프로젝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제주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관광산업과 농업만으로 제주의 앞날을 밝게 이끌어 가기는 어렵다. 김태보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투자 목표액 가운데 불과 10%만이 투자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금융허브 프로젝트 역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처럼 곤란을 겪을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외금융센터 설립 경쟁에서 제주가 패한 것이 그 근거이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다시 살펴보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7대 선도프로젝트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쇼핑아웃렛 개발이다.

그런데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수도권 밖에서는 근무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수한 이공계 젊은이들이 제주도로 들어올지 의문이고,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제주 외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이나 기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지 의문이다. 서귀포 관광미항 사업이나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및 쇼핑아웃렛 개발 역시 근본적으로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제주에 들어와야 할 동기나 흥미거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사업성 검토와 분석이 미진한 상황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제주금융허브 프로젝트 역시 구호만 무성하고 실익은 없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느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우선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익이 있는 목표를 세운 뒤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참고문헌

- 손진화(2006),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 정경영(2007), 『전자금융거래와 법』, 법문사
- 강임호(2007), 『디지털금융 누가 주도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법제연구원(2008), 서민금융 질서회복을 위한 대부업 관련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2008), KIF 금융논단 모음집,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2008),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I - 미국-, 한국법제연구원